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607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22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0. 3. 18. 접수 제78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장두영

별지